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8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4.

발 의 자 : 송언석 · 김미애 · 김은혜
윤한홍 · 구자근 · 박준태
성일종 · 최은석 · 김상훈
정희용 · 이종욱 · 최수진
유용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·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·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,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·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, 제17

조제3항 신설, 제18조제1항, 제36조 신설).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본문 중 “공립 박물관”을 “공립·사립 박물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사립·대학 박물관”을 “대학 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등록 박물관·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, 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장(제36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장 벌칙

제36조(과태료)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박물관, 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8조(사립 박물관·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니면 박물관, 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18조(사립 박물관·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) ①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장 벌칙

제36조(과태료)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박물관, 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·징수한다.